

문서번호	총무과-5855
결재일자	2016.3.9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총무팀장	총무과장	행정관리국장
고형권	이종영	서문석	03/09 고재식
협 조			

2016년 행정관리국
성과상여금 지급계획



행 정 관 리 국
(총 무 과)

행정관리국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

I 지급 개요

- 근거 : 『2016 성과상여금 지급계획』 구청장방참-289호(2016. 3. 4.)
- 대상 : 6급이하 147명(호봉제 적용 공무원 및 청원경찰)

구분	인원	직급	등급별 인원(명)				
			계	S	A	B	C
일반직 별정직	139	7급	73	7	33	17	16
		8급	35	4	11	4	16
		9급	31	3	11	4	13
전문경력관	2	나군	2	-	1	1	-
청원경찰	6	경위	3	-	2	1	-
		경사	3	-	2	1	-

등급별 인원 및 지급률

지급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인원비율	10%	50%	40%	0%
지급률	162.5%	125%	95%	0%

지급기준일 : 2015. 12. 31.

- 파견공무원 :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
- 지원근무자 : 2개월 미만 근무자는 원소속 부서에서, 2개월 이상 근무자는 현소속 부서에서 지급

지급단위 : 행정관리국 7급 이하(6급 이상 구 전체 지급)

지급방법 : 개인별 차등 지급(매월 분할 지급)

평가방법 : 근무성적평정+부서업무평가+관리자평가+기타

소요예산 : 292백만원

□ **성과등급 평가방법**

- 근무성적평정(40점), 부서업무평가(30점), 관리자평가(25점), 기타 가·감점(5점)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
 - 근무성적평정 : ('15년 상반기 평정점 + '15년 하반기 평정점) /2
- 부서업무평가점수(30점) (별표2 참조)
 - 5, 6급 : 區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결정
 - 7급 이하 : 지급단위별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결정
- 관리자평가점수(25점) (별표3 참조)
 - 5급 : 부구청장 평가(40%), 국장 평가(60%)
 - 6급 : 국장 평가(40%), 부서장 평가(60%)
 - 7급 이하 : 부서장 평가(40%), 팀장 평가(60%)
- 기타 가·감점(5점)

내용	가점기준	감점기준
격무·기피부서(팀) 근무기간 가점	1년이상 근무 +1 2년이상 근무 +2	-
복무점검(출근·초과·보안점검 등)		횟수별 -2
주의, 훈계 등		횟수별 -2
친절 가점, 불친절 감점	친절공무원 선발 +1	불친절민원 건별 -1
인센티브 수상실적	건별 +2	
규제개혁 및 창의적 업무개선 실적	건별 +1	
예산확보 및 예산절감 실적	건별 +1	
기 타	지급단위성과급심사위원회별 별도 선정 가능	

※ 근무기간 가점 : 지급단위(국)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국별 현황을 반영하여 선정(과, 팀3 이내)

- 직렬 구분없이 직급(계급)별로 평가

- 지급제외 대상자 : 최하위순위(C등급) 필수 배치
 -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
 - 평가기간 중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
- 파견·교류자 : 최소 B등급 이상 부여
- 동점자 처리기준
 - ① 근무실적(목표달성도)평정점수가 높은 자
 - ② 현 보직기간이 긴 자
 - ③ 현 직급임용일이 빠른 자

III 성과등급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

□ 성과급심사위원회

- 구 성
 - 위원장 : 행정관리국장
 - 위 원 :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, 간사 : 총무계장
- 심의내용
 - 7급이하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사항 심의
 - 성과등급 결정 적정성 심사
 - 기타 조정 및 결정이 필요한 사항
- 부서업무평가 점수(30점) 부여

□ 순위명부 작성

- 개인별 종합 평가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직급별 순위명부 작성

□ 지급등급결정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

- 결과 통보
 - ①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결과를 소속 부서의 장에게 통보 <붙임 제4호 서식>
 - ② 소속부서의 장은 즉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 통보
 - ※ 최하위등급(C등급)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
- 이의제기

- ① 본인의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부서장에게 재심 요구 <붙임 제5호 서식>
- ② 부서장은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區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요구
- ③ 區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2일 이내 재심 결과 본인에게 통보

□ 기타사항

-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
- 그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『2016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』 적용

IV 행정사항

□ 업무추진일정

-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작성
- 행정관리국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: 3. 11.(금)
- 지급등급결과 통보(국→부서장→개인) : 3. 11.(금)
- 이의제기기간(개인→부서장): 3. 11.(금)~3. 15.(화)
- 이의제기사항 재심사(區성과급심사위원회): 3. 16.(수)~3. 18.(금)

(별표 1)

성과상여급 지급기준액

□ 지급등급 및 지급률

지급등급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비고
인원비율	10%	50%	40%	0%	
지급률	162.5%	125%	95%	0%	

□ 직급별 지급기준액(조정지수=0.94218)

(단위 : 원)

구분	직급	지급대상 (현원)	지급기준액 (A)	조정지급 기준액 $A \times 0.94218$	지급액			
				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
계		1,145						
일반직 별정직	소계	1,137						
	5급	53	3,715,800	3,500,967	5,689,070	4,376,200	3,325,910	0
	6급	242	3,194,600	3,009,901	4,891,080	3,762,370	2,859,400	0
	7급	468	2,716,000	2,558,972	4,158,320	3,198,710	2,431,020	0
	8급	188	2,256,200	2,125,755	3,454,350	2,657,190	2,019,460	0
	9급	186	1,918,400	1,807,486	2,937,160	2,259,350	1,717,110	0
전문 경력관	소계	2						
	나군	2	3,019,000	2,844,453	4,622,230	3,555,560	2,702,230	0
청원 경찰	소계	6						
	경위	3	3,077,700	2,899,760	4,712,110	3,624,700	2,754,770	0
	경사	3	2,707,600	2,551,057	4,145,460	3,188,820	2,423,500	0

이 의 신 청 서

소 속		직 급		성 명	
성과상여금 지급등급					
이의신청 사유 (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)					
기타 참고사항					
<p>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0px;">2016년 월 일</p> <p style="margin-left: 100px;">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(서명)</p> <p style="margin-left: 150px;">행정관리국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</p>					